

# 1.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2,596,272	10,577,888
일반회계	317,967,937	9,539,038
특별회계	34,628,335	1,038,850
기타특별회계	34,628,335	1,038,85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612,560	48,377
수질개선특별회계	13,813,589	414,408
농업소득기금특별회계	5,520,000	165,600
기초생활및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413,811	12,41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313,067	159,392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1,791,509	53,7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680,567	20,417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4,772,834	143,185
소수력발전사업 특별회계	90,000	2,7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20,398	18,612

제 2 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와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9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56,17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